

의안번호 제101호

논산시 자치분권 촉진·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			
제출연월일	2021. 7. 23.			

논산시 자치분권 촉진 ·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알 제101호

제출연월일: 2021. 7. 23. 제 출 자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논산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수를 30인으로 하며 분과위원회를 두어 협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함(안 제9조제1항)

나. 자치분권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둠(안 제9조제5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1. 6. 8. ~ 2021. 6. 28. 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자치행정과(041-635-3604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자치분권 촉진 ·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20명"을 "30명"으로 한다.

제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협의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⑥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며, 협의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	· 부 서		성 1	持0	
입	마을	자치분권	년과장	원	승	우
· 안	마 을	· 자 치	팀 장	정	은	숙
자	담	당	자	박 (04	영 1-746-5	미 5245)

□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의장	제9조(협의회 구성) ①
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<u>20명</u>	<u>30명</u>
이내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	
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	
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	
하여야 한다.	
②~④ (생략)	②~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협의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
	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
	<u>있다.</u>
<u> <신 설></u>	⑥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
	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며, 협의회
	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
	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
	<u>본다.</u>

붙임

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비용발생 요인 : 논산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

○ 관련 조문 :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·지원 조례 제15조(수당 등)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논산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(2회)

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함. ※ 3명 제외

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 계
세출	일반회계	1,800	3,600	5,400	5,400	5,400	21,600
산출						100천원×27명	21,600
기초	삼식수당	×1회=1,800	×2회=3,600	×2회=5,400	×2회=5,400	×2회=5,400	,

다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천원)

연도 구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계	1,800	3,600	5,400	5,400	5,400	21,600
도비	0	0	0	0	0	0
시비	1,800	3,600	5,400	5,400	5,400	21,600

3. 작성자

마을자치분권과장 윤 승 우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	입	1,800	3,600	5,400	5,400	5,400	21,600
Ę	국 비						
7	기 금						
Ī	로 비						
)	시비	1,800	3,600	5,400	5,400	5,400	21,600
세	출	1,800	3,600	5,400	5,400	5,400	21,600
○ 회의취	참석 수당	1,800	3,600	5,400	5,400	5,400	21,600
재	원 조달	1,800	3,600	5,400	5,400	5,400	21,600
	소 계						
의존 재원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	소 계	1,800	3,600	5,400	5,400	5,400	21,600
자체	지방세	1,800	3,600	5,400	5,400	5,400	21,600
수입	세외수입						
	공모사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약	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